건설근로자 퇴직금 이중 지급

대한설비건설협회, 중복 공제금은 제외해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현 제도상 1년 미만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를 수주한 사업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법정퇴직금과 퇴직공제금을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박종학)는 사업자가 법정퇴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체 지급액에서 퇴직공제금을 제외한 잔액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므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통해 노동부와 건교부 등 정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는 동일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지난 1998년부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금 성격의 퇴직공제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02년말 법개정(제12조)을 통해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 대신 법정퇴직금을 받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정퇴직금 지급대상 건설근로자에게 미리 지급된 퇴직공제부금액을 법정퇴직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조항(제17조)도 삭제해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는 두 종류의 퇴직금을 모두 받는 사례가 빚어지게 되었다.

실제 공사진행에 따라 투입직종과 인력이 결정되는 건설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제가입대상공사를 수주한 사업주는 건설근로자 전부에게 퇴직공제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그중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설근로공제회에 신고된 건설근로자가 1년 이상 고용돼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에서 퇴직공제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적용

노동부, 관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22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에서 임의적용대상으로 변경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자활사업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 받는 자나 공무원 외 공무원 연금을 적용 받는 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그동안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만 장려금이 지급되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에서 인력을 지원 받아도 장려금이 지원된다.

전직 지원장려금도 모든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이 고용조정 근로자 외 이직 예정인 근로자까지 확대되어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고령자와 여성, 장애인을 위한 작업공정 및 사무환경 등 시설과 장비를 설치 · 개선하는 기업도 소요비용을 대부나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 및 고용관리진단 지원에 따라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과 비효율적인 고용관리 개선 등 사업장의 인력관리 체계를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에 맞춰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이나 직무 재설계 등에 관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를 지원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산업구조의 변화로 발생한 기업의 인력활용 수요에 부응해 사업장의 인력관리 효율성 제고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